

정정대비표

1. 대상투자신탁: 블랙록 아시아 쿠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2. 주요정정내용: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자본시장법 시행령 215조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집합투자규약에만 해당)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설명서 업데이트

3)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3. 효력발생일: 2020.11.06

4. 변경 내용:

가. 집합투자규약

변경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42 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215조 개정사항 반영	<p>제 42 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p> <p>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p> <p>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p> <p>3. 법 제 184 조제 4 항,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p> <p>4.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p>	<p>제 42 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 · 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p> <p>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p> <p>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p> <p>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p> <p>3. 법 제 184 조제 4 항,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p> <p>4.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p>

	<p>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6.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6.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보상 금액: 변경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7 조 제 3 항 따른 집합투자업자 보수율</p> <p>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 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p> <p>3. 지급방법: 손실보상금은 제 37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서에서 인출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p> <p>(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 다만,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보상 금액: 변경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7 조 제 3 항 따른 신탁업자 보수율</p> <p>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 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p> <p>3. 지급방법: 손실보상금은 제 37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판단 및 결정 하에 투자신탁재산서에서 인출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p> <p>(⑥) 제 4 항 및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부칙	((신규))	<p>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일에 체결되었으나,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일괄 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p>

나. 투자설명서

변경항목

정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의 금융정보 관련 유의사항 조항 추가	((추가))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 (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	5 등급 낮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및 수익률 업데이트	((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변경	5 등급 낮은 위험 연환산 표준편차: 2.73%	4 등급 보통 위험 연환산 표준편차: 6.77%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기준일 변경	((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업데이트	((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	((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

다. 간이투자설명서

변경항목	정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투자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	5 등급 낮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투자비용	기준일 변경	((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
투자실적 추이	기준일 변경	((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및 수익률 업데이트	((전년도 결산일 기준 작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작성))